

계명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계명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우리 대학교 동물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실험을 수반한 연구·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
2. 우리 대학교 동물실험실 내 동물실험의 승인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 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시설의 종사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5.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8. 4.)

1. 의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의사
 - 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위원 위촉대상자교육을 이수한 의사
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동물보호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한 사람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위원 위촉대상자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
하는 교수

다.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
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위원 위촉대상자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교원으로 겸보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
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고, 각종 동물실험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실험동물
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
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
재한다.

1.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② 회의는 연 2회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를 3년 이상 보존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동물실험계획 제출·심의·승인 등) ①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동물실
험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하고, 신규로 동물실험을 신청하는 경우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와 함께 심사비를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심사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관련 서류

② (삭제 2025. 8. 4.)

③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실험동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동물실험에 관한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실험동물 구입 및 반입은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5. 8. 4.)

제8조의2(동물실험계획의 변경)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 신설 2025. 8. 4.)

1.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 수술로 변경
2. 동물 종(계통)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 이하 증가
3.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4.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5. 진정·진통·마취 방법
6. 안락사방법 변경
7. 동물실험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변경
8.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9. 그 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제7호 및 제8호 중 경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간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없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9조(승인기간 등) ① 동물실험계획의 승인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동물실험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우에도 동물실험 수행자는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최초 승인 다음연도부터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동물실험계획 승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발급한다.

②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승인을 철회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1이상 위원과 작성자인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실험 수행)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동물실험 수행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대학에서 주관한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동물을 반입하고 난 후 7일 이내에 거래명세서와 함께 실험동물 반입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와 실험동물 사체처리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심의 후 감독 및 동물실험시설의 점검) ① 위원회는 심의 후 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신설 2025. 8. 4.)

1. 심의한 실험의 진행 및 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2. 동물실험과 관련된 사항 논의 및 실험자 등 질문 사항 검토

3. 동물실험과 관련된 불만족 사항 접수 및 개선 방안 등

② 심의 후 감독 절차 및 일정, 점검 사항 등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신설 2025. 8. 4.)

③ 위원회는 우리 대학교 내 동물실험실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 8. 4.)

제15조(심의 경비 부담 및 예산 지원)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사비(외부위원)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공개)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기록물의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조치요구) ①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특수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험을 하는 경우 동물실험수행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연구책임자에게 관련 문서 및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종전의 내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 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 8. 4.)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접수일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위원장
접수(승인)번호	- 접수일은 심사비 입금일			

1. 일반사항

과제명	(국문)
	(영문)
실험기간	위원회 승인 일 이후 ~ 년 월 일 (총 일/주/개월)
실험구분	☐ 신규 ☐ 계속 (구 계획서 승인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전공/학위		교육이수	☐ 기관자체교육(일자: ,이수번호:) ☐ 정부주관교육(일자: ,이수번호:)		
동물실험수행자(1)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전공/학위		교육이수	☐ 기관자체교육(일자: ,이수번호:) ☐ 정부주관교육(일자: ,이수번호:)		
동물실험수행자(2)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전공/학위		교육이수	☐ 기관자체교육(일자: ,이수번호:) ☐ 정부주관교육(일자: ,이수번호:)		

실험동물	동물종류	☐ 마우스 ☐ 랫드	미생물학적 등급	☐ SPF ☐ 준SPF(Clean) ☐ 일반(Conv.) ☐ 기타()	
		☐ 토끼 ☐ 기니피그		사육 희망 장소	☐ barrier구역 ☐ Semi-barrier구역 ☐ 일반구역
		기타 ()		공간명(호실)	
	계통	(SD, ICR, C57BL/6.)	반입 예정일	년 월 일	
	성별/수량	♂: 우:	동물 구입처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업체이어야 합니다. 2) 분양의 경우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체중/주령	gram/ 주령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여부 및 병원체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식약청에 사전 보고할 것)		
☐ 사용하지 않음		
☐ 사용함	위험군 (병원체) 분류	☐ 제1위험군(병원체:) ☐ 제2위험군(병원체:) ☐ 제3위험군(병원체:) ☐ 제4위험군(병원체:) ※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실험지침에 따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2. 연구 및 실험개요

1. 연구목적

-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기술
- 동물실험 개요(별지, A4용지 1~2매)를 작성하여 첨부
- 학생실습용 동물실험 신청 시 강의계획서 사본을 첨부

2. 동물실험의 필요성

3.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유무

☐ 검토하였으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 검토하였으나, 대체수단으로는 연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검색사이트

☐ PubMed ☐ Current Contents Connect ☐ 한국학술정보 ☐ 기타 ()

Key words

- 적어도 3개 이상 기입함

4. 해당 동물(animal)과 종(strain)을 선택한 합리적 이유

- 연구의 생물학적 연관성 제시

5. 사용 동물 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

- 가능하면 동물 수를 산출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

6. 실험방법 (프로토콜) 개요

-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동물실험에 관한 내용 (시험물질, 대조물질, 마취제, 투여경로, 투여량, 투여횟수, 투여기간 등)
- 샘플 채취에 관한 내용 (혈액, 뇨, 조직 등/ 용량, 횟수, 방법 등)
- 감염인자 및 adjuvant 종류 / 투여방법 / 용량 등
- 외과적 처치내용
- 복수의 대규모 수술실험을 시행하는 경우 그 필요 사유 기술 (단, 원칙적으로 불허함)

7. 환경풍부화(Enrichment), 특별한 주거(Housing) 및 사육조건 필요 유무

8.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해당사항에 √ 표)

- ☐ 고통등급 A: 원생동물,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 ☐ 고통등급 B: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
- ☐ 고통등급 C: 척추동물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혹은 단기간의 작은 통증을 주는 실험
- ☐ 고통등급 D: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
- ☐ 고통등급 E: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할 경우 실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험 등)

※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동물실험은 10번 사유 기재

9. 고통등급 D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에서 동물의 통증 혹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방법

- | | |
|--------------------------|---------------------------------------|
| ☐ | 마취제, 진통제 등을 사용:
- 약물명, 투여량, 경로를 기입 |
| ☐ | 기타:
- 사육환경 개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 |

10.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유 (필요 시 별지로 상세 사유 첨부)

- | | |
|--------------------------|--|
| ☐ | 인도적 종료시점은 채택하지만, 연구목적 상 진정제, 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고통경감을 위한 방법 없음
- 상세 사유 기재
예) 통증실험 수행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침 |
| ☐ | 연구목적 상 인도적 종료시점을 채택하지 않고 동물의 죽음을 종료시점으로 설정해야 함
- 상세 사유 기재
예) LD50 측정을 위한 독성실험 |

11. 윤리적 측면에서의 인도적인 종료시점(humane endpoint) 기준

- 실험동물에게 극도의 통증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동물 실험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험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
- 인도적 안락사 기준이 필요 없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기재할 것

12. 안락사 방법

- ☐ 약제 (사용약물 :) ☐ CO₂ 가스 ☐ 경추탈골
☐ 기타 ()

※ 사체처리방법 (보관 장소 및 사체 처리업체명) :

13. 연구자를 위한 작업환경의 안전성 확보 여부

- 사용하는 물질 및 동물과 관련한 안전장치, 설비 및 개인안전보호장비 등
- 비상상황에 대한 조치방안

14. 연구자의 허가사항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 유 (), 무()
 2. 방사선작업종사자 취급 허가(교육 이수여부) 유 (), 무()

- 해당되는 연구자만 기재
- 담당기관의 승인 증명 사본 제출
-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이 동물실험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담당기관의 취급허가를 취득한 후 동물실험 승인신청서 제출 가능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매년 이수한 후 동물실험 승인신청서 제출 가능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1.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3R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의 수행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2.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계명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한 동물실험방법을 준수하겠습니다.
3. 과제 승인 기간은 최대 1년임을 확인하였으며, 1년이 초과할 경우 재승인하겠습니다. 또한 승인된 계획을 변경할 경우 동물실험 변경신청서를 통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알리고 승인을 받겠습니다.
4. 연구책임자로서 본인을 포함한 등록된 실험수행자들이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승인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도록 책임지도하겠습니다.
5. 위 사항의 이행과 함께 위원회 및 동물실험시설장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며 본 동물실험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5. 8. 4.)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접 수 번 호 (승 인 번 호)		평 가 일 시	20 . . .
과 제 명			
실 험 기 간	20 . . . ~ 20 . . .		

심의평가기준			
1	동물실험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 적합 ☐ 부적합	7	환경풍부화, 특별한 주거 및 사육조건의 필요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	실험자의 교육이수 또는 훈련도·경험도의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8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3	해당 동물실험계획의 대체방안 존재 여부 ☐ 확인 ☐ 미확인	9	Grade D 해당되는 경우, 진정·진통·마취제의 사용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4	요구한 동물 종(계통, 등급)의 타당성 ☐ 적합 ☐ 부적합		Grade E 해당되는 경우, 선택한 연구사유의 타당성 ☐ 합 ☐ 부적합 ☐ 해당없음
5	요구한 동물 마리수의 근거 ☐ 적합 ☐ 부적합	10	인도적인 종료시점 및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6	동물실험 방법(프로토콜)의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11	동물구입처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 복수의 대규모 수술 실험 수행 시 필요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12	연구자의 안전대책 및 허가에 대한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평가결과 및 의견		
결 과	의 건	
☐ 원안 승인 ☐ 수정 후 승인 ☐ 수정 후 재심 ☐ 승인 거부		
	평 가 위 원	(인)

[별지 제5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1. 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2. 동물실험계획서

접 수 번 호	
과 제 명	
실 험 기 간	
사용 동물 종 및 마리 수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3. 승 인 사 항

심 의 일 자	
승 인 일 자	
승 인 번 호	
심 의 위 원 의 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상기의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계명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인)

계명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동물실험계획서 승인번호 : _____

실험동물 사체처리 보고서

1. 보고일 : . . .

2. 연구자 관련 사항

구 분	직 위	성 명	소 속	연 락 처
연구책임자		(인)		
실험 담당자		(인)		
실험 담당자		(인)		

3. 실험동물 사체처리 세부사항

동물 종			
용도 및 실험내용			
마리 수		체중(kg)	
사체처리 방법			
기타사항			

본 사체처리 보고서가 실제 결과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실험동물 사체처리결과를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계명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인)